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7. 1. 세종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.>

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발급일자		처리기간		일
소유자		성명(명칭)						
		주민등록번호(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						
		주소						
구 분		(변경)전 내용			(변경)후 내용		사유	
분리	대지위치 (건축물 명칭)							
결합	대지위치 (건축물 명칭)							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·결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축물현황도(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 1부 2. 현황측량성과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,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) 1부	수수료 없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	